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6. 5. 22.

내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6년 5월 17일

. 회부일자 : 1996년 5월 17일

다. 상정일자 : 제125회 임시회

. 제2차 내무위원회(1996. 5. 22)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내무국장 최 경 주)

가. 제안이유

-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과 업무추진의 일원화로 자치단체의 능률성을 높이고 행정추진을 간소화하여 주민편의를 도모 하고자함.

나. 주요골자

- '96년 2월 조직개편 및 직제규칙 개정에 따라 사무관장부서 정비
- 도지사권한 사무중 시장,군수,출장소장이 처리함이 주민편의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사무위임.
- 관계법 개정으로 업무폐지 및 위임조항 정비

3. 전문위원검토의견

(전문위원 오창환)

충청북도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그 주요 내용으로는

이는 '96년 2월 조직개편 및 직제규칙의 개정과 관련하여 행정사무의 관장 부서의 변동요인에 의해 도와 시·군간의 행정사무의 기능을 재분배하고 권한의 합리적 배분으로 행정추진의 간소화와 능률화 및 주민편의를 도모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그 주요 내용으로는

'96년 2월의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종전 지방과를 자치행정과로 하고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부녀복지과를 여성복지과로, 보신과를 보건행정과로, 원예유통과를 농업유통과로, 산림녹지과를 산림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과로 행정조직상의 과명칭을 변경 하고자 함과 아울러 통폐합된 사회진흥과 소관 및 청소년과 소관의 새마을금고 본사무소 설치 승인 사무와, 청소년지도자 교육실시 사무인 권한 위임 사무를 삭제코자 하는 것이며,

환경관리과 소관 사무에 있어 종전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등의 수용사무등 10개 조항사무에 대해서는 삭제함과 동시에 삭제한 폐기물 관련 사무에 대해 환경지도과 소관 사무로 이관 신설 위임코자 하는 것이며 기타 21개조항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일련번호의 재조정과 함께 위임조항을 7개조항으로 하여 조정정비 코자 하는 것입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있어서는 사립 결핵진료소 및 영양소의 설치 허가 및 변경허가 사무를 신설하려는 것이며,

. 수질관리과 소관 사무에 있어서는 지하수와 관련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한 지하수의 개발, 이용 및 보전 관리의 조사등 12개호 사무와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 및 공동 시설의 시정 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 축산과 소관 사무에 있어서는 어선총톤수측정 및 개측사무등 13개조항 사무에 대해 삭제함과 아울러 어선의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등의 4개조항 사무에 대해 관계법개정 내용에 따라 수정 위임함과 아울러 이에 대한 위임사무의 일련번호를 재조정 하려는 것입니다.

. 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도 소매업진흥에 관한 소관 사무중 2개호에 대하여 삭제하고 시장의 개설허가를 시장의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수리등으로 8개호에 대해 사무내용을 보완 개정하여 위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 지역개발과 소관 사무에 있어서도 용도지역 표시지형도면의 작성 용도지역 지정 목적에 적합한 토지사용 권고, 토지형질 변경 준공검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공업단지 지정권자인 도지사가 민간기업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의 9개호 사무와, 토지구획정리사업시공 감독, 환지계획인가, 재개발사업시행자 지정신청, 지도감독등의 위임사무에 대해 신설위임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 치수과 소관 사무에 있어서는 지하수개발 이용의 신고처리 사무등 9개 사무를 삭제 하려는 것이며,

·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있어서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관리에 관한 사무 7개호사무 및 건설기계등록 관리에 관한 사무 13개호사무와 정기검사, 교육기관지정, 구조변경승인 사용정지처분, 보고검사, 의견진술 기회 부여, 과태료 부과징수 이의신청 처리 및 건설기계저당권 관리에 관한 사무 4개호 사무를 신설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의 도모와 자치단체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행정추진의 간소화를 위해 위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수정안요지 :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질관리과 소관 사무 제2호(가)항의 먹는물에 대한 수질검사 사무명에“(먹는물관리법제3조제3호는제외)” 한다는 단서 자구 삽입.

7. 심사결과 : 수정 동의안 7인중 7인 찬성으로 동조례 개정안의
수질관리과 소관사무 제2호(가)항의 사무명 조문에
“(먹는물 관리법제3조제3호는 제외)” 한다는 단서를
삽입하여 수정의결하고 기타부분은 도원안대로 의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필요한 사항 : “없 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신구조문 대비표
-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